

#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인 사 말

학교는 성장기의 미성년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는 공간이며, 실험·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학습의 장인 관계로 각종 사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교안전공제 담당자들이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사례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의 상해 및 질병사고, 기타 특이사고 사례별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학교안전사고 사례집」이 교육청, 공제회 및 학교 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학교안전공제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 7.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양 희 산



# 목 차

## I. 사고에 의한 사례

1. 등·하교 시간 .....	15
2. 교육활동 일반 .....	20
가. 수업활동시간 .....	20
나. 특별활동시간 .....	46
다. 과외활동시간 .....	53
라. 수련활동시간 .....	64
마. 교내·외 체육대회시간 .....	72
3. 휴식시간 .....	80
4. 학교체류시간 .....	118

## II. 질병에 의한 사례

1. 일사병 .....	125
2.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126
3.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27

## III. 기타 특이 사례

### [부록]

- 2009년도 학교안전사고 통계

# 사례별 분류

## 등·하교 시간

1.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사람을 피하다 넘어져 팔 골절상 ..... 15
2. 하교 중 횡단보도의 자전거가 넘어져 다리 부상 ..... 16
3. 하교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부상 ..... 17
4.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머리 부상 ..... 18
5. 등교 중 배수로 뚜껑 철근에 의한 다리 부상 ..... 19

## 수업활동시간

6. 놀이시간 중 넘어져 청각 장애 ..... 20
7. 체육대회 연습 중 치아 부상 ..... 21
8. 물질분리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얼굴 화상 ..... 22
9. 열전도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전신 화상 ..... 23
10. 요리실습 중 전기 주전자 물이 쏟아져 화상 ..... 24
11. 일반수업 중 옆 학생의 장난으로 인한 눈 부상 ..... 25
12. 체육수업 중 포환에 맞아 머리 부상 ..... 26
13. 축구경기 중 헛발질로 인한 척추 골절 ..... 27
14. 체육관의 물품 이동 중 어깨 부상 ..... 28
15. 기체발생 실험 중 폭발에 의한 눈 부상 ..... 29

16. 팔굽혀펴기 중 봉에 의한 치아 부상 .....	30
17. 피구경기 중 손가락 부상 .....	31
18. 미술실 사다리의 튀어나온 못을 밟아 발바닥 부상 .....	32
19. 일반수업 중 샤프심에 의한 부상 .....	33
20.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골절상 .....	34
21. 쿠션으로 장난을 치던 중 시신경 손상 장애 .....	35
22. 축구경기 중 포환에 맞아 머리 부상 .....	36
23. 체육수업 줄넘기 중 실신 .....	37
24. 체육수업 달리기 연습 중 눈 부상 .....	38
25. 농구경기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	39
26.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장비 실습 중 손가락 절단 .....	40
27. 자동차 정비 실습 중 충돌로 인한 발목 부상 .....	41
28. 중장비 운전실습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 .....	42
29. 조리 실습 중 프라이팬 기름이 튀어 안면부 2도 화상 .....	43
30. 농구 경기 중 팔꿈치에 맞아 치아 부상 .....	44
31. 특수아동 자전거 타기 실습 중 부상 .....	45

### 특별활동시간

32. 사물놀이 수업 중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	46
33. 주사위 만들기 실습 중 가위에 의한 부상 .....	47

34. 현장체험 학습 중 익수 사고 .....	48
35. 실험 도구 정리 중 장난으로 식초가 눈에 튀어 부상 .....	49
36. 과학실험 중 시약이 튀어 전신 화상 .....	50
37.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비장 파열 사고 .....	51
38. 마필관리 실습 중 말 뒷발에 차여 얼굴 부상 .....	52

### 과외활동시간

39. 유도부 학생 체력단련 훈련 후 사망 .....	53
40. 육상부 학생 부상 부위 방치에 의한 악화 .....	54
41. 축구부 수업 중 공에 맞아 눈 부상 .....	55
42. 유도부 학생 기술 훈련 중 척추 부상 .....	56
43. 다이빙 훈련 중 부상 방치에 의한 악화 .....	57
44. 레슬링부 학생이 축구경기 중 시각 장애 .....	58
45. 레슬링부 학생이 기술 훈련 중 식물인간 .....	59
46. 레슬링부 학생이 비정규 야외훈련 중 익사 .....	60
47. 농구부 학생의 누적된 부상으로 인한 악화 .....	61
48. 바다 야외활동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 .....	62
49. 야구부 학생 해외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 .....	63
50. 장대높이뛰기 훈련 중 추락하여 사지마비 .....	64

## 수련활동시간

- 51. 발코니를 통해 방을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간 손상 ..... 65
- 52. 수련활동 중 친구들의 장난으로 전신 상해 ..... 66
- 53. 레크레이션 중 친구와 부딪혀 비장 파열 ..... 67
- 54. 소풍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시각 장애 ..... 68
- 55. 해외 수학여행 중 호텔 수영장에서 익수 후 사망 ..... 69
- 56. 발코니를 통해 방을 이동하다 추락하여 척추 장애 ..... 70
- 57. 특수학생이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사망 ..... 71

## 교내 · 외 체육대회시간

- 58. 체육대회 참가 중 방화셔터 작동 미숙으로 부상 ..... 72
- 59. 체육 시설물 준비 중 석회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손상 ..... 73
- 60. 입학예정자가 양궁 훈련 중 화살에 맞아 실명 ..... 74
- 61. 계주 달리기 중 넘어져 신장 부상 ..... 75
- 62. 단체 줄넘기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 76
- 63. 다이빙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마비 ..... 77
- 64. 축구대회 경기 중 넘어져 부상 ..... 78
- 65. 줄다리기 중 옆 사람과 부딪혀 무릎 부상 ..... 79



## 휴식시간

66. 화장실 내부 칸을 보다가 떨어져 손가락 부상 .....	80
67. 구름사다리에서 놀이 중 부상 .....	81
68. 교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장해 .....	82
69. 친구들끼리 다툼으로 뇌동정맥기형 진단 .....	83
70. 줄타기 기구의 줄이 풀려 부상 .....	84
71. 강당무대에서 잡기놀이를 하다 추락하여 장해 .....	85
72. 친구와 싸움에 의한 치아 부상 .....	86
73.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	87
74. 급식실로 이동 중 계단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	88
75. 잡기놀이를 하던 중 콘크리트 벽에 부딪쳐 무릎 부상 .....	89
76. 사물함 위에서 추락하여 발목 골절 .....	90
77. 음악실 문에서 장난을 치다 유리가 깨져 시각 장해 .....	91
78. 복도에서 친구와 충돌하여 사망 .....	92
79. 교실문이 바람에 갑자기 닫히면서 손가락 부상 .....	93
80. 잡기놀이 중 교실문 유리가 깨져 눈 부상 .....	94
81. 교실에서 기절놀이를 하던 중 머리 부상 .....	95
82. 교실 밖 차양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 .....	96
83. 교내 건물 간 통행로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 .....	97
84. 커튼을 치던 중 유리창을 깨뜨려 팔 부상 .....	98

85. 축구 경기 중 넘어져 무릎 부상 .....	99
86. 창문을 넘던 중 추락하여 발목 골절 .....	100
87.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 중 추락하여 뇌진탕 .....	101
88. 친구와 장난이 다툼으로 변하여 상해 .....	102
89.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져 치아 부상 .....	103
90. 장난치다가 교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사망 .....	104
91. 흡연을 위해 창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 .....	105
92.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부상 .....	106
93. 식사 중 갈비탕의 뼈를 잘못 씹어 치아 부상 .....	107
94.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	108
95. 레슬링 놀이 중 엉덩이 뼈 골절 .....	109
96. 충동적으로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	110
97.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	111
98. 골키퍼를 보던 중 척추 부상 .....	112
99.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산에 눈이 찢려 장해 .....	113
100. 잡기놀이 중 옹벽에서 추락하여 장해 .....	114
101. 야구공 주고받기를 하던 중 공에 맞아 치아 부상 .....	115
102. 화단 아래로 급히 내려가던 중 넘어져 부상 .....	116
103. 학교 담장을 넘던 중 손가락 부상 .....	117

## 학교체류시간

- 104. 교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장해 진단 ..... 118
- 105. 장난을 치던 중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 119
- 106. 조기 등교생이 교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 ..... 120
- 107. 계단에서 술래잡기 중 난간에 얼굴 부상 ..... 121

## 질병에 의한 사례

- 108. 등산 후 일사병으로 사망 ..... 125
- 109. 페이스페인팅 물감에 의한 피부염 ..... 126
- 110. 학교 뒷산을 다녀온 후 쯔쯔가무시병 감염 ..... 127

## 기타 특이 사례

- 111. 미니등반대회에 참가 중 뇌출혈 ..... 131
- 112. 지적장애 학생이 열차에 치여 사망 ..... 132
- 113. 스케이트 장 현장학습 후 질병 발생 ..... 133

114. 기왕증을 가진 학생이 교사의 체벌 후 뇌출혈 .....	134
115. 교사의 훈계 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 .....	135
116. 기왕증을 가진 학생이 체육수업 후 사망 .....	136
117. 상급학생의 폭행에 의한 사망 .....	137
118. 교사의 훈계 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척추 장애 .....	138
119. 수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	139
120. 자율학습 중 기왕증에 의한 쓰러짐 .....	140
121. 친구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 .....	141
122. 학부모 일일교사 수업 중 실명 .....	142



# 1. 사고에 의한 사례

1. 등 · 하교 시간
2. 교육활동 일반
3. 휴식시간
4. 학교체류시간





## 1. 등·하교 시간

### ■ 사례 1 (초등학교)

####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사람을 피하다 넘어져 팔 골절상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28일 15시 55분경 사고학생은 하교 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학교 정문의 횡단보도를 지나칠 때 갑자기 접근한 사람을 피하려다 넘어져 왼쪽 팔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전방 주시 소홀

**예방대책** ○ 자전거를 이용하여 하교 시 전방 주시 교육 철저  
○ 돌발 상황 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 (초등학교)

### 하교 중 횡단보도의 자전거가 넘어져 다리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2월 10일 14시경 사고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정문의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누군가 전봇대 옆에 세워둔 자전거가 쓰러져 사고학생의 발에 걸려 넘어짐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다리 찰과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하교지도 소홀

**예방대책** ○ 돌발 상황 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 (초등학교)

#### 하교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부상

○○초등학교 4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9일 15시 25분경 사고학생이 하교를 위해 교내 현관으로 걸어 나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손잡이에 왼쪽 눈을 부딪쳐 안와 하벽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걸어가지 못한 사고학생의 과실
- 가해자의 주의 부족

**예방대책**

- 특별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교내 안전수칙 제정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보상심사위원회에 안건 제출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장해급여 청구 각하(법령상의 절차 위반)

## 사 례 4 (중학교)

###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머리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21일 12시 50분경 사고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앞에 주행하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침

즉시 친구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급성 외상성 경막상 출혈, 뇌좌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자전거 운전 미숙
- 자동차 급정거로 인한 돌발 상황

**예방대책**

- 등·하교 중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
- 자동차,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 사 례 5 (고등학교)

### 등교 중 배수로 뚜껑 철근에 의한 다리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5월 14일 7시 45분경 사고학생은 등교 중 운동장 쪽으로 뛰어가다가 배수로 뚜껑을 밟았고, 갑자기 배수로 뚜껑이 파손되어 왼쪽 발이 배수로에 빠져 종아리 부위의 열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시설물 관리 미흡

**예방대책** ○ 등·하교 시 학생들 통행지도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향후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반려

## 2. 교육활동 일반

### 가. 수업활동시간

#### ■ 사례 6 (유치원)

#### 놀이시간 중 넘어져 청각 장애

○○유치원 꽃들방 (여)

**사고개요** 2009년 5월 12일 17시 10분경 사고원아가 유치원 놀이방에서 블록 쌓기 놀이를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뒷목과 두개골 충격에 의한 두통 진단 후 조제약을 복용해 왔음

1차 사고 발생 후 5월 25일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중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1차 사고 부위에 재충격을 받아 장기간 외래치료와 듣기치료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귀의 청각장애(노동력 상실 29%) 판정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 대처 능력 미흡

**예방대책** ○ 유아는 항상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도교사는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함  
○ 계단 등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한 용단 등으로 실내공간을 시공하여야 함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장애급여 지급 재결

## 사 례 7 (초등학교)

### 체육대회 연습 중 치아 부상

○○초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4월 3일 사고학생은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반 학생들과 교내 체육대회 단체 종목인 풋다리밟기 연습 중 다른 학생과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바닥에 안면을 부딪쳐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함

**사고원인** ○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 소홀

**예방대책** ○ 체육활동 시 사전 준비운동과 사고예방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재결

## 사 례 8 (초등학교)

### 물질분리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얼굴 화상

○○초등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3월 26일 12시경 사고학생이 교실에서 책상 4개를 붙이고 “가루 혼합물 속에 들어 있는 물질 알아내기” 실험을 하던 중 같은 조 학생들이 서로 자세히 관찰하려다 책상이 밀려 쏟아진 알코올에 불이 붙음 이후 지도교사가 책에 붙은 불을 급히 소화하였지만, 사고학생과 남학생 두 명의 얼굴에 중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 과학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실험(책상 4개를 붙여 사용)
- 보조교사 없이 지도교사 혼자서 실험(학급 전체를 관리하기엔 역부족)

**예방대책**

- 실험은 반드시 과학실에서 실시
- 저학년에 대한 실험은 고학년으로 바꾸거나 영상물로 대체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미청구

## 사 례 9 (초등학교)

### 열전도 실험 중 알코올로 인한 전신 화상

○○초등학교 4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0월 23일 11시 15분경 과학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6명이 한 조가 되어 실험 중 사고학생이 책상에 알코올을 쏟아 불이 붙음  
이 때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까이에서 보던 사고학생의 앞머리카락과 상의에 불이 옮겨 붙어 머리, 목,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 실험 시 지도교사의 안전지도 부족
- 실험 시 위험물질 사용방법 지도 미흡

**예방대책**

- 실험 시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는 지도교사의 세심한 관리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0 (초등학교)

### 요리실습 중 전기 주전자 물이 쏟아져 화상

○○초등학교 5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1월 29일 10시 36분경 요리실습 중 ○○○학생이 교실 뒤에 있는 전기 주전자의 플러그를 꽂으려고 줄을 당길 때 전기 주전자의 끓는 물이 근처에 있던 사고학생의 등에 쏟아져 오른쪽 귀, 목, 등, 손목에 화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과 실습기의 안전거리 미확보
- 지도교사의 학습 지도 소홀

**예방대책**

- 위험요소가 내포된 기구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사용법 지도 강화
- 실습 전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지도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1 (초등학교)

### 일반수업 중 옆 학생의 장난으로 인한 눈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9일 13시 32분경 교실에서 ○○○학생이 자신의 책상 위의 지우개를 찍기 위해 들어 올린 볼펜에 사고학생의 눈이 찔려 각막 열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수업 중에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미흡
- 좁은 공간에서 사고발생 가능성 인식 부족

**예방대책**

-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의를 관찰토록 지도
- 근접한 거리에서 필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미청구

## 사 례 12 (초등학교)

### 체육수업 중 포환에 맞아 머리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6월 9일 9시 50분경 사고학생은 체육수업 중 투포환 수행평가를 위해 운동장에 마련한 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학생이 포환을 던지려고 손을 뒤로 젖히는 순간 들고 있던 포환이 뒤로 빠져 사고학생의 머리에 맞아 쓰러짐

즉시 지도교사는 사고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검사 결과 두개골 함몰골절, 경막상혈종,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예방대책** ○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3 [초등학교]

### 축구경기 중 헛발질로 인한 척추 골절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2월 22일 14시 15분경 사고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헛발질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땅에 부딪침  
사고 당시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며칠 후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한 달간 쉬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척추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 중 사고발생
- 지도교사의 충분한 안전교육 미이행

**예방대책**

- 체육수업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지나친 경쟁 자제
- 지도교사의 사전 안전교육 및 철저한 입장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4 (초등학교)

### 체육관의 물품 이동 중 어깨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1일 11시 5분경 사고학생이 체육관의 의자 및 책상을 학교 옆 이동식 창고로 운반하던 중 창고 출입문 틈에 의자 다리가 끼임  
의자 다리를 억지로 빼내려고 하다가 출입문 고리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사고학생의 어깨 밑이 찢려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학교 시설물 방치 및 관리 소홀

**예방대책**

-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
-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5 [초등학교]

### 기체발생 실험 중 폭발에 의한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6월 26일 11시 50분경 사고학생의 지도교사가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에 의한 수소기체발생” 실험 중 1차 실험에서 기체가 발생하였으나 불꽃반응이 없어 소량의 마그네슘을 추가하여 2차 실험을 실시함

잠시 후 발생한 기체에 불꽃이 점화되어 큰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과 삼각플라스크의 유리 파편이 사고학생의 눈에 튀어 각막 열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실험 중 잘못된 시약 사용량에 의한 폭발사고

**예방대책** ○ 과학 실험 지도서와 이전 실험내용을 참고하여 사전 실험을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6 (중학교)

### 팔굽혀펴기 중 봉에 의한 치아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8일 12시경 체육수업 중 사고학생이 운동장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다가 팔 힘이 떨어져 팔굽혀펴기 봉에 앞 치아를 부딪쳐  
치아 일부가 파절 된 사고

**사고원인** ○ 자신의 체력한계에 벗어난 무리한 운동 실시

**예방대책** ○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7 (중학교)

### 피구경기 중 손가락 부상

○○중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9월 15일 체육수업 피구경기 중 사고학생이 공을 받다가 손가락에 비켜 맞음

이후 보건실에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통증과 붓기에 호전이 없어 귀가조취 후 부모님과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결과 손가락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체육수업 공놀이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예방대책**

- 체육수업 공놀이 시 기본자세 교육 및 숙지
- 지도교사의 안전교육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사고학생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담당의사의 소견 요청



## 사 례 18 (중학교)

### 미술실 사다리의 튀어나온 못을 밟아 발바닥 부상

○○중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4월 7일 15시 40분경 사고학생이 미술실에서 미술도구를 정리하던 중 나무 사다리의 튀어나온 못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발바닥에 상처를 입게 된 사고

**사고원인** ○ 교과 실습실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미흡

**예방대책** ○ 교과 실습실에 대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9 (중학교)

### 일반수업 중 샤프심에 의한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0월 16일 기술·가정 수업 중 사고학생이 친구와 샤프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는 것처럼 장난을 치던 중 손의 힘줄에 샤프심이 박혀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장난에 대한 조치 미흡

**예방대책**

- 필기구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안전 지도
- 우발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 교육
- 위험한 장난에 대한 철저한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0 (중학교)

###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골절상

○○중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10월 20일 10시20분경 사고학생이 지도교사와 면담 도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현기증이 나 화장실 옆 복도 창틀에 앉아 쉬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3층 아래의 승용차 위로 추락하여 등뼈, 엉치뼈, 골반, 허리뼈의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시설물의 안전장치 미설치
-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전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1 (중학교)

### 쿠션으로 장난을 치던 중 시신경 손상 장애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6월 23일 11시 20분경 사고학생이 자습시간에 ○○○학생과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의자 쿠션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난을 치던 중 ○○○학생이 때린 쿠션의 모서리가 사고학생의 눈에 맞게 됨

이후 사고학생은 눈에 통증과 피멍이 들고, 사물이 흐려 보여 귀가 후에 ○○안과를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장난에 대한 학생 스스로 인식 부족
- 수업시간에 지도교사의 교실 면학 분위기 조성 미흡

**예방대책**

- 지도교사가 수업시간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통제 필요
- 교실 내 학생 사용 물품에 대한 안전지도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22 (중학교)

### 축구경기 중 포환에 맞아 머리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13일 9시 45분경 사고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포환 연습장에 굴러간 공을 가지러 뛰어 들어갔다가 날아온 포환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경막외출혈 및 두피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미흡
-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위험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지도교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3 (중학교)

### 체육수업 줄넘기 중 실신

○○중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10년 3월 26일 13시 30분경 사고학생이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장시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미흡

**예방대책** ○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  
○ 식사 후에는 무리한 체육활동은 자제하도록 지시  
○ 체육활동 시 개인별 체력상황을 판단하여 체력조절에 유의하도록 함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지급 예정

## 사 례 24 (고등학교)

### 체육수업 달리기 연습 중 눈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5월 1일 9시 20분경 사고학생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 대비 계주 연습 중 달리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체육관 단상 측면에 얼굴을 부딪쳐 오른쪽 눈 밑 안와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하여 무리한 달리기
- 학생들 건강상태 체크 미흡

**예방대책**

-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체육활동 전 준비운동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5 (고등학교)

### 농구경기 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고등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9월 16일 15시 50분경 사고학생은 체육시간 농구경기 후 가슴 통증, 호흡곤란과 함께 경련을 일으켜 지도교사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음

이후 지도교사는 사고학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경련은 차도가 없어 ○○병원으로 본인 차량을 이용해 후송함

정밀 검사 결과 사고학생의 체력에 비해 운동량이 지나쳐 심장과 폐기능의 일시정지 진단을 받음

**사고원인**

- 학생의 특이한 사항에 대한 사전 파악 미흡
- 학생 개인별 건강상태 체크 미흡

**예방대책**

- 운동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찰
- 주변 학생과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정보 파악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6 (고등학교)

###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장비 실습 중 손가락 절단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9월 9일 9시 20분경 사고학생이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연습을 위해 학교 주조 실습실에서 평판을 벨트샌더 장비에 가공하던 중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벨트 사이에 끼어 좌 제2·3수지 신전근 파열 및 좌 제4·5수지가 절단된 사고

**사고원인**

-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미이행
-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미흡

**예방대책**

- 실습 전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철저
-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27 (고등학교)

### 자동차 정비 실습 중 충돌로 인한 발목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8일 11시 30분경 사고학생이 자동차 정비 실습 중 실습용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기 위해 차량을 후진 중이었음

이후 정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불완전한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해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을 치었고 이에 당황한 사고학생이 가속페달을 밟아 후방에 있던 실습 장비 차량과 충돌하게 됨

그 충격으로 운전석 문에 사고학생의 발목이 눌러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예방대책** ○ 위험성이 높은 장비는 실습 전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실습 시에는 정확한 작동법 및 사고를 대비한 안전거리 확보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28 [고등학교]

### 중장비 운전실습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0월 20일 10시 5분경 사고학생은 중장비 운전 실습장에서  
○○○학생이 실습 중이던 지게차에 갑자기 올라탄 후 몸을 뒤로 돌  
면서 뛰어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게차의 바퀴에 깔려 다  
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

**사고원인**

-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미흡
- 중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미이행

**예방대책**

- 실습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
-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및 안전수칙 준수 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 사 례 29 (고등학교)

### 조리 실습 중 프라이팬 기름이 튀어 안면부 2도 화상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8월 26일 12시 30분경 사고학생이 조리 실습 중 미끄러운 바닥에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있는 프라이팬을 팔꿈치로 쳐 얼굴과 목에 기름이 튀어 안면부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주의력 미흡
- 실험·실습 시 주위 환경 정리 정돈 미흡

**예방대책**

- 실습 시작 전 화기와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험에 대한 예지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0 (고등학교)

### 농구 경기 중 팔꿈치에 맞아 치아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10월 25일 15시 30분경 사고학생이 체육시간에 다른 학년과 농구 경기를 하는 중이었음

사고학생이 ○○○학생과 공중에서 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뛰고 내려오던 중 ○○○학생의 팔꿈치에 치아를 맞아 상악우측 측절치가 파절된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승부욕에 의한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체육활동 시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철저  
○ 과격한 운동 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지급 결정

## 사 례 31 (특수학교)

### 특수아동 자전거 타기 실습 중 부상

○○학교 중학 3학년 (여)

**사고개요** 2010년 3월 22일 13시 55분경 특수학교에서 자전거 타기 실습을 위해 학생 한 명씩 자전거를 태운 후 경사로를 이동하고 있었음  
지도교사가 다른 학생을 이동시키고 올라오던 사이에 사고학생(정신 지체 2급)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경사로를 직진하여 정면에 마주하고 있는 수위실 벽에 부딪혀 안면부상(코 골절, 이마 뼈 다침, 안면 내 신경조직 파괴, 안면 피부 절개, 아랫니 전부 빠짐)과 무릎 부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특수학생에 대한 관리 소홀

**예방대책** ○ 특수학생의 경우 일반학생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져,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도교사의 주의가 요구됨  
○ 특수학생 전문 관리자 및 적정 인원 배치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나. 특별활동시간

### 사 례 32 (초등학교)

#### 사물놀이 수업 중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월 15일 사고학생이 방학 중 방과 후 활동으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사물놀이에 참가하여 쉬는 시간에 창문으로 올라가 장난을 치던 중 3층 창밖으로 추락하여 양측 대퇴부 원위부 골절, 좌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골절, 우측 하악골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관리 감독 교사, 학부모의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 부재

**예방대책** ○ 지도·감독 교사의 철저한 입장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3 [초등학교]

### 주사위 만들기 실습 중 가위에 의한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25일 13시 40분경 방과 후 수업시간에 종이를 잘라 주사위 만들기를 하던 중 ○○○학생의 실수로 가위가 사고학생의 코 밑을 스쳐 인중 열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안전주의 의식 부족

**예방대책** ○ 안전상 위험요소가 내포된 기구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사용법 지도 강화  
○ 지도교사의 입장지도하에 행하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4 (초등학교)

### 현장체험 학습 중 익수 사고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8월 14일 9시 40분경 사고학생이 ○○수영장에서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하던 중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각심 미흡
- 지도·감독교사의 충분한 안전교육 미흡

**예방대책**

- 현장체험 학습 시 교직원의 철저한 안전지도 실시
- 지도·감독교사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5 (초등학교)

### 실험 도구 정리 중 장난으로 식초가 눈에 튀어 부상

○○초등학교 4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2월 17일 14시 40분경 사고학생은 방과 후 과학실험부 수업에서 식초와 탄산수소나트륨을 재료로 하는 실험을 마치고 약품을 수거하던 중 ○○○학생과 장난을 치다 식초가 눈에 튀어 각막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물질을 놀이도구로 사용
- 사전에 위와 같은 학생들의 위험 놀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예방이 미흡

**예방대책**

- 실험실 내 위험한 장난 금지 교육 필요
- 지도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6 (중학교)

### 과학실험 중 시약이 튀어 전신 화상

○○중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7월 25일 10시경 사고학생이 여름방학특기적성 과학 수업에서 성냥 만들기 실험을 하던 중 성냥개비머리 만들기 재료를 비커에 넣자 시약들이 반응하여 폭발해 비커를 쥐고 있던 사고학생에게 불이 붙은 시약들이 튀게 됨

사고 즉시 사고 부위를 물에 씻은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 오른손에 3도 화상, 얼굴과 목, 가슴, 다리에 1도 화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미흡
- 위험물질 사용에 따른 대책 미흡

**예방대책**

- 실험 전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지도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37 (중학교)

###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축구경기 중 비장 파열 사고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6월 9일 16시 20분경 사고학생이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축구반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공중 볼을 헤딩슛으로 처리하려고 점프를 하는 순간 골키퍼의 무릎에 복부를 심하게 부딪혀 비장 파열로 장해판정(노동력 상실 5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골문 앞에서 볼을 선취하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 발생한 사고

**예방대책** ○ 구기 종목 활동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예방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장해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38 (고등학교)

### 마필관리 실습 중 말 뒷발에 차여 얼굴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10월 29일 18시 40분경 사고학생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인 마필관리 실습을 하던 중 끌고 가던 말이 갑자기 날뛰어 이를 진정시키려다 뒷발에 안면부위를 차여 우측 광대뼈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말의 컨디션 파악 미흡
- 실습하고자 하는 말의 특성 숙지 미흡

**예방대책**

- 말의 컨디션 및 특성 파악 강화
- 반드시 교사의 지도로 이동
- 실습 중 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다. 과외활동시간

### 사 례 39 [초등학교]

#### 유도부 학생 체력단련 훈련 후 사망

○○초등학교 5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9월 16일 8시 30분경 유도부 소속 학생이 아침 체력단련 후 갑자기 쓰러져 코치 및 학생 2명이 숙직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였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코치의 선수 선발과정에서의 문제(학생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체격으로 선수 선발)
- 신속·적절한 응급처치의 부재

**예방대책**

- 학생의 체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수 선발
- 자신의 체력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도록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유족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40 (초등학교)

### 육상부 학생 부상 부위 방치에 의한 악화

○○초등학교 5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5월 20일 8시 30분경 사고학생은 육상부 훈련 중 다리 근육이 늘어났으나 부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귀가함  
그러나 2008년 5월 21일 ~ 23일 까지 몸에 열이 많이 나고 걷기가 힘들어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결과 근육 부위에 세균이 침투되어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된 사고

**사고원인**

- 체육특기생 학생들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의 피로 누적
-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조치 부재

**예방대책**

- 체육특기생 훈련 시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 자제
-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41 (초등학교)

### 축구부 수업 중 공에 맞아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6월 7일 15시경 고도근시인 사고학생은 방과 후 활동 축구부 수업 중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을 맞았고, 안경만 찌그러지고 눈은 별 이상이 없었음

그러나 3주 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안과에서 검사 결과 외상성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기왕증
- 작은 부상을 방치한 지도교사의 부주의

**예방대책**

-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 철저
- 작은 부상이라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사 례 42 (초등학교)

### 유도부 학생 기술 훈련 중 척추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5월 29일 사고학생이 유도부 훈련 중 ○○○학생과 허벅다리 걸기를 하다 허리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코치가 현장에서 얼음 마사지 및 테이핑을 실시한 후 귀가조치 함

그러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병원에서 검사 결과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과격한 운동 시 준비운동 부족과 평소 사고학생에 대한 건강 체크 소홀

**예방대책** ○ 훈련 전 준비운동 철저히 지도  
○ 지도교사의 정확한 동작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43 [초등학교]

### 다이빙 훈련 중 부상 방치에 의한 악화

○○초등학교 6학년 (여)

**사고개요** 사고학생은 2006년 9월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였고, 2008년 1월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부모님께 말하였으나 형제들도 안경을 쓰는 관계로 사고학생도 눈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고, 2008년 4월 11일 사고학생의 왼쪽 눈이 아무것도 안보여 안과를 찾음

△△안과에서 검사 후 왼쪽 눈 유리체 절제술, 액체가스 교환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 렌즈제거술을 받은 후 2009년 1월 15일 시각 장애 판정(노동력상실 5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운동 종목 신체 적합성 조사 및 주기적인 신체상태 체크 미흡
- 작은 부상에 대한 관심 부족

**예방대책**

- 다이빙 훈련 시 준수사항 숙지 및 이행
- 운동자가 신체 이상을 보고했을 때 신속조치
- 주기적인 신체상태 체크, 지도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44 (중학교)

### 레슬링부 학생이 축구경기 중 시각 장애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월 11일 15시경 사고학생은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코치가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레슬링부 전원(45명)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게 하였고, 골문 전방에서 볼을 선취하려고 여러 사람이 서로 엉키는 과정에서 사고학생이 넘어지는 순간 ○○○학생에게 안면부를 차여 좌측 안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시각 장애판정(노동력 상실 5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경기 정원을 초과한 인원 투입으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

**예방대책** ○ 코치는 학생의 연령과 체격을 감안하여 단체경기를 진행하여야 함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장애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45 (중학교)

### 레슬링부 학생이 기술 훈련 중 식물인간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월 11일 15시경 사고학생은 소년체육대회 대비 동계 강화 합동훈련을 위해 체육관에서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들과 합동훈련을 하는 중이었음

준비운동을 마치고 사고학생과 ○○○학생이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학생의 기술이 풀려 머리가 먼저 매트에 부딪쳐 식물인간이 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기초 기술 습득 미숙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기술별 충분한 훈련과 위험한 상황에 순간적인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함
- 과도한 승부욕으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

**처리경과**

- 공제회 : 장해·간병급여 지급 결정 통보하였으나  
※ 학부모의 불복으로 소송 진행 중

## 사 례 46 (중학교)

### 레슬링부 학생이 비정규 야외훈련 중 익사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8월 9일 ~ 8월 16일까지 사고학생은 ○○중학교 체육관에서 3개 학교가 참여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하계 강화훈련을 하고 있었음

8월 13일 코치가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학교장의 승인 없이 훈련장을 벗어나 ○○유원지를 방문함

점심을 먹은 후 무릎높이 정도의 물에서 고무보트를 타고자 학생 3명이 물속으로 뛰어가다 2명은 고무보트를 잡았으나 사고학생은 발을 헛디더 익사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소홀

**예방대책**

- 교육계획에 따라 정해진 훈련장을 벗어난 활동 자제
- 물놀이 시 충분한 주의사항 주지와 안전장비 착용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47 (중학교)

### 농구부 학생의 누적된 부상으로 인한 악화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9일 16시경 사고학생은 농구부로서 훈련을 하던 중 오른 쪽 무릎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연습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함  
엑스레이 촬영 및 검사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 질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음  
이후 통증이 사라지고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무리하게 회복 훈련을 하여 우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체육특기생으로 반복되는 농구연습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 누적
- 부상 부위의 완치 전 운동으로 인한 부상 악화

**예방대책**

- 체육특기생들의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 누적된 신체적 부상을 예방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48 (중학교)

### 바다 야외활동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8월 26일 8시 10분경 사고학생은 바닷가에서 같은 반 학생 23명 및 지도교사와 함께 학급 야외 활동인 “해돋이 기차여행”에 참여하였음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모래사장에서 공놀이를 한 후 지도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너울성 파도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정보수집과 그에 따른 조치 미흡

**예방대책**

- 위험한 물가에서의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
- 지도교사의 부재중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가에서는 지도교사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됨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사 례 49 (중학교)

### 야구부 학생 해외훈련 중 질병으로 사망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해당학교 야구부는 2008년 1월 13일부터 동년 2월 11일까지 대만 자  
이에서 동계훈련 계획에 따라 체력보강 및 야구기능 숙달을 위한 훈  
련을 실시함

2월 3일 오후 갑자기 사고학생이 두통을 호소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현지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  
고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뇌염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그에 따른 조치 미흡

**예방대책** ○ 뇌염 발생 위험지역으로의 전지훈련 자제 및 부득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미청구



## 사 례 50 (고등학교)

### 장대높이뛰기 훈련 중 추락하여 사지마비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9월 27일 14시 30분경 사고학생은 육상부 소속으로 장대높이뛰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동작을 숙달하고 공중 버티기 3회 동작을 실시하던 중이었음

장대를 폴 박스에 넣어 휘어지는 동작 중 장대가 제대로 휘어지지 않고 방향이 틀어지면서 장대를 놓치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고

**사고원인**

- 매트 좌우 측면 보조매트 등 안전장비 미비
- 어깨인대 이상으로 재활훈련 중이었으나 무리한 훈련 강화 돌입

**예방대책**

- 충분한 넓이의 매트를 깔아 안전사고에 대비
-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습 및 경기 자재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라. 수련활동시간

### 사 례 51 (중학교)

#### 발코니를 통해 방을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간 손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4월 16일 21시 45분경 사고학생은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자유 시간에 ○○콘도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4층 발코니를 통해 방을 이동하며 놀다 1층으로 추락함  
사고 즉시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하여 CT촬영 및 각종 검사를 받았으며, 간정맥 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미흡
-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 학교의 수학여행 중 안전교육 미흡

**예방대책**

-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외의 활동을 나갈 경우 학생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52 (중학교)

### 수련활동 중 친구들의 장난으로 전신 상해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3년 4월 23일 사고학생의 학교는 ○○유스호스텔에서 수련활동 중 지도교사가 학생들에게 방을 나오거나 떠드는 학생은 등을 두드리는 벌을 주겠다고 함

이후 사고학생이 고개를 내밀자 친구들이 손으로 사고학생의 등을 두드렸고, 일부 학생들은 발로 허리와 배 부분을 수차례 밟아 요추부 염좌 및 요배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소홀
- 친구들의 지나친 장난

**예방대책**

- 수련활동 중 지도교사의 관리 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법 시행 전 사고)

## 사 례 53 (고등학교)

### 레크레이션 중 친구와 부딪혀 비장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6월 18일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뛰어 가던 중 복부를 벽 모서리에 부딪쳐 비장출혈 진단을 받음

이후 사고학생이 2007년 10월 18일 ○○연수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중 레크레이션 시간에 ○○○학생과 부딪혀 비장 파열(노동력 상실률 50%)로 장애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부위 부상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교육활동 중 부상을 당할 경우 부상 부위의 완치 전까지 주의하여 활동할 것을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법 시행 전 사고)

## 사 례 54 (고등학교)

### 소풍행사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시각 장애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10월 12일 ○○고등학교는 ○○공원에서 가을 소풍행사를 실시하였음

사고학생은 소풍행사에서 반 대항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골대 앞에서 슈팅을 하던 ○○○학생의 무릎에 눈을 부딪혀 각막에 심한 충격을 받아 장애판정(노동력 상실 24%)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들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안전의식 부족

**예방대책** ○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생활체육이 되도록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장애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55 (고등학교)

### 해외 수학여행 중 호텔 수영장에서 익수 후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사고학생의 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국어교육 강화 및 국제화교류의 일환으로 미국 소재 대학 부설 연수기관과 해외연수 계약을 하고 14일 일정으로 2008년 7월 18일 하와이 현지호텔에 도착함

이후 사고학생은 친구들과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졌고, 친구들이 사고학생을 구하고 지도교사와 911에 알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함

그러나 계속 뇌사상태에 있어 학부모와 주치의 최종협의를 통해 질식과 기도폐쇄에 의한 뇌사판정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현장학습 중에 호기심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 부족
- 호텔 상주 안전요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결여

**예방대책**

- 현장학습에서 개별 활동 금지 및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전 교육 철저
- 현지 숙박 시설 관리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사 례 56 (고등학교)

### 발코니를 통해 방을 이동하다 추락하여 척추 장애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4월 11일 사고학생은 ○○청소년수련관에서 102호실 숙소를 배정받아 20시 15분경 교사의 정숙지도 및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교사가 다른 호실로 이동한 사이 20시 25분경 베개싸움을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복도 통로로 옆 103호실로 이동하였음  
이후 창문 베란다를 통해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뎈 지하실 통로로 추락하여 요추 제2, 3, 4번 후방 고정술 및 후외방 척추 유합술 시행 후 장애등급 제6급(노동력상실률 7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학생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지능력 함양  
○ 학생들에게 지나친 장난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장해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장해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장해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57 (특수학교)

### 특수학생이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사망

○○특수학교 전공과 (남)

**사고개요** 2008년 6월 3일 20시 45분경 ○○특수학교 학생들은 견학을 마치고 콘도 4층에서 휴식 중 지도교사가 자리를 비운사이 사고학생이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사고학생(지적장애2급)이 발코니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었고 그대로 추락하였음

이후 ○○병원의 권유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23시경 중증심폐손상으로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특수아동의 돌발적 행동을 고려하지 못함

**예방대책** ○ 숙박업소를 이용한 특수학생의 수학여행이나 견학 시엔 돌발적인 행동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숙소를 1층으로 정할 것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마. 교내·외 체육대회시간

### 사 례 58 (초등학교)

#### 체육대회 참가 중 방화셔터 작동 미숙으로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10년 2월 22일 9시 10분경 사고학생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안내방송을 듣고 계단을 통해 대회장으로 내려가던 중 함께 참가한 ○○○학생이 장난으로 건물의 방화셔터 작동버튼을 눌렀고, 셔터가 하강하는 것을 본 사고학생이 그 밑을 지나가려다 셔터에 어깨와 목 부분이 끼여 의식을 잃은 후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결여
-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교외 활동 시 항상 지도교사 동행
- 학생의 위험한 장난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 현재 치료 중에 있음

## 사 례 59 (초등학교)

### 체육 시설물 준비 중 석회가루가 눈에 들어가 각막 손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10일 11시 13분경 사고학생은 교내 체력장을 위해 준비 운동을 끝내고 스탠드를 내려가던 중 옆에 있던 ○○○학생이 던진 것 밧에 묻어있던 석회가루가 날려 눈에 들어가 좌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시설물 이용 시 부주의

**예방대책** ○ 위험한 행동 등을 발견 즉시 행동을 적극적으로 재재하여야 함  
○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장해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60 (중학교)

### 입학예정자가 양궁 훈련 중 화살에 맞아 실명

○○중학교 입학예정자 (여)

**사고개요** 2009년 2월 26일 21시 20분경 ○○중학교 양궁부 입학예정자인 사고 학생은 코치가 훈련생 간식을 사기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양궁훈련 을 마치고 훈련 중인 학생과 과녁사이로 이동하다가 연습을 하던 ○ ○○학생이 쏜 화살에 눈이 맞아 실명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훈련장의 시설 보완

**예방대책**

- 위험한 장비를 이용한 훈련은 지도교사의 입장하에 실시
- 사로를 손쉽게 통행할 수 없도록 시설 보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61 (중학교)

### 제주 달리기 중 넘어져 신장 부상

○○중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10월 23일 9시 50분경 사고학생은 교내 체육대회에서 반 대표 제주 선수로 달리를 하던 중 발을 헛디더 배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짐  
즉시 지도교사가 사고학생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좌측 신장이 파열되어 적출 진단(노동력상실률 5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학생의 부주의
- 사고학생의 지나친 승부욕

**예방대책**

- 당일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기분 등을 확인
-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 자제토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62 [고등학교]

### 단체 줄넘기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5월 28일 13시 56분경 사고학생은 운동장에서 교내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단체 줄넘기 중 30m를 2회 달려와 줄넘기 줄을 잡는 순간 그대로 쓰러짐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원인불명 내인사(급성심장사의 가능성 있음)로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입학 때 신체 이상 여부 확인 미흡

**예방대책** ○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유족급여 지급 결정

## ■ 사 례 63 (고등학교)

### 다이빙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마비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9월 1일 19시 40분경 역도부 소속인 사고학생은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3 ~ 6번 손상에 의한 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미흡
- 수영장의 구조 및 물높이 체크 미흡

**예방대책**

-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강화
- 코치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64 (고등학교)

### 축구대회 경기 중 넘어져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6월 19일 16시 40분경 사고학생은 시청과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지면에 무릎을 부딪쳐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사고원인**

- 체육경기 중 우발적 사고
- 과격한 운동 시 대처능력 미흡

**예방대책**

- 구기 종목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실시.
- 과격한 운동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 체육활동 시작 전 충분한 준비운동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65 [초등학교 학부모]

### 줄다리기 중 옆 사람과 부딪혀 무릎 부상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여)

**사고개요** 2009년 5월 1일 ○○○학생의 학부모인 사고자가 ○○초등학교의 축제계획에 따라 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 줄다리를 하던 중 옆 사람과 충돌로 인하여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사고원인** ○ 사고자의 부주의

**예방대책** ○ 성인이기는 하지만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장해 급여 청구 각하(법령상의 절차 위반)



### 3. 휴식시간

#### 사 례 66 (초등학교)

#### 화장실 내부 칸을 보다가 떨어져 손가락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5월 26일 8시 25분경 사고학생은 친구들이 화장실 내부 칸문이 잠겨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생과 화장실로 가 한 명이 옆드리면 다른 한 명이 등위에 올라서서 화장실 안쪽을 보자는 얘기를 함

○○○학생이 먼저 옆드리자 사고학생이 등을 밟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오른손 약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화장실 문틀 상부에 걸리면서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가락 다발성 골절 및 절단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
-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함양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 사 례 67 [초등학교]

### 구름사다리에서 놀이 중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2일 12시 20분경 사고학생은 점심 식사 후 친구들과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놀던 중 용접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지면서 쇠기둥에 등을 맞아 요추와 천골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시설물 점검 및 관리 소홀

**예방대책** ○ 교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학생들에게 안전지도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68 [초등학교]

### 교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장애

○○초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2월 12일 13시 15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교실문을 닫던 중 문틈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쪽 약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의 1/2 절단됨

보건교사는 사고학생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손가락 절단 진단과 장애판정(노동력상실률 5%)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및 학생들의 사고 인지능력 배양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  
장애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69 [초등학교]

### 친구들끼리 다툼으로 뇌동정맥기형 진단

○○초등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7년 12월 11일 12시 5분경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게임(3·6·9, 포테이토 칩 등)을 하고 있던 중 사고학생이 참여시켜 달라고 하자 ○○○학생이 인원이 차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함  
참여시켜주기 싫다는 말로 오인하여 들은 사고학생이 ○○○학생과 다투던 중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짐  
이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선천성혈관기형)으로 인한 출혈 진단을 받음

**사고원인**

- 입학 시 신체이상 여부 확인 미흡
- 요양호자에 대한 관리 미흡

**예방대책**

-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도교사의 철저한 감독
- 학교 내 요양호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급여 청구 기각

## 사 례 70 (초등학교)

### 줄타기 기구의 줄이 풀려 부상

○○초등학교 4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2월 19일 12시 50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있는 줄을 잡고 오르는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놀이를 하던 중 기구의 줄이 풀려 추락함

사고 직후 보건실로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왼쪽 손목과 성장판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교내 놀이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미흡

**예방대책** ○ 학교 노후 놀이기구 등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71 (초등학교)

### 강당무대에서 잡기놀이를 하다 추락하여 장애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8일 11시 30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교내 강당 무대 위에서 ○○○학생과 잡기놀이를 하던 중 ○○○학생의 발에 걸려 강당 바닥으로 엎드린 채 추락함

사고 직후 수업을 위해 강당에 온 체육교사가 사고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비장 파열 진단과 장애판정(노동력 상실률 50%)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에 대한 주의의식 결여
- 사고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지도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 무대 위에서는 뛰지 않기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애급여 지급

## 사 례 72 [초등학교]

### 친구와 싸움에 의한 치아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1월 18일 12시 30분경 사고학생은 사소한 시비로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학생이 발로 안면부를 걷어 차 치아 2개가 빠짐

사고 직후 지도교사가 사고학생과 빠진 치아를 가지고 ○○치과에 내방하여 검사 결과 전치 2개 탈구와 1개 파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벌어진 학교 폭력사고임

**예방대책** ○ 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인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하여 가해행위의 부당성과 피해학생의 고통을 이해시킴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가해자의 경제 사정 고려)

## 사 례 73 (초등학교)

### 계 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초등학교 6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2월 20일 10시 40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에 실과실에서 열리는 알뜰시장 행사 구경을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뎠다 복도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미흡
- 학생의 주의의무 미흡

**예방대책**

- 조·종례 시 교내 안전교육에 대해 주지시킴
- 학생들의 알림장을 이용하여 가정에도 사고예방 홍보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74 (중학교)

### 급식실로 이동 중 계단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3일 13시 5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복부로 난간봉(높이 130cm)을 타고 내려오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4층에서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함  
사고 직후 친구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다리 골절, 허리부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난간을 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였으나, 점프를 해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본인의 부주의

**예방대책** ○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주의 입간판 및 미끄럼 방지 발판, 걸레 등을 비치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75 (중학교)

### 잡기놀이를 하던 중 콘크리트 벽에 부딪쳐 무릎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3일 13시 50분경 사고학생이 점심식사를 한 후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면서 교실로 급히 뛰어가던 중이었음  
이 때 뒤를 돌아보다가 교실 출입문 옆의 콘크리트 벽에 무릎을 부딪쳐 무릎 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장난을 하지 못 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미흡

**예방대책** ○ 지속적인 실내 질서 및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76 (중학교)

### 사물함 위에서 추락하여 발목 골절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3월 20일 10시 50분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  
○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학생이 잡으려고 쫓아오자 도망을 감  
그 과정에서 사물함 위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리던 중 넘어져 오른쪽  
발목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교내 정숙지도 미흡
- 과도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77 (중학교)

### 음악실 문에서 장난을 치다 유리가 깨져 시각 장애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7월 4일 14시 17분경 사고학생의 반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음악실로 이동하였고, 음악실에는 5교시에 수업을 마친 ○○○학생과 지도교사가 상담 중이었음

이를 모르고 음악실에 들어간 사고학생이 다시 나가려 하였지만 밖에 있던 반 학생들이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았고, 지도교사가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며 일어서는 순간 사고학생이 손바닥으로 문 유리창을 깨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감

이후 ○○병원에서 안구복원술, 인공수정체 삽입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교내 정숙지도 미흡
- 과도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조·종례 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78 (중학교)

### 복도에서 친구와 충돌하여 사망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2월 14일 10시 35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 복도에서 걸어가던 중 교실문에서 달려 나오던 ○○○학생과 충돌하여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며 팔다리의 마비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짐  
이후 ○○병원에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 받던 중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교내 정숙지도 미흡
- 사고학생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미흡

**예방대책**

- 교실이나 복도 이용 시 뛰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출입 할 수 있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예정

## 사 례 79 (중학교)

### 교실문이 바람에 갑자기 닫히면서 손가락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6월 15일 14시 30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로 들어가려고 교실문의 문설주에 손을 대고 있던 중, 복도와 교실의 창문으로 맞바람이 불어와 갑자기 문이 닫혀 검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가 절단됨  
△△병원에서 손가락 신경절단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 교실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미흡
- 교실 출입문의 안전장치 미흡

**예방대책**

- 교실 출입문에 안전장치 설치
- 사고 발생이 많은 출입문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0 (중학교)

### 잡기놀이 중 교실문 유리가 깨져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2월 4일 10시 50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함께 잡기놀이를 하던 ○○○학생이 교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사고학생이 주먹으로 문을 쳐 깨진 유리 파편이 눈에 튀어 각막손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장난에서 비롯된 사고

**예방대책** ○ 출입문, 화장실, 계단 등에서 심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 전달 및 위험 표시 설치 또는 스티커 부착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1 (중학교)

### 교실에서 기절놀이를 하던 중 머리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15일 12시 50분경 사고학생이 점심시간에 ○○○학생에게 본인은 기절하지 않는다며 기절놀이를 요청함

○○○학생은 요청대로 기절놀이를 가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자 재차 기절놀이를 가하자 사고학생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고

**사고원인** ○ 기절놀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절놀이를 요청한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도교사의 철저한 감독이 요망됨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사 례 82 (중학교)

### 교실 밖 차양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0월 19일 13시 15분경 사고학생이 점심시간에 학생부장이 교내 순시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교복 폭을 줄인 것에 대한 적발을 우려하여 3층 교실 밖 차양으로 나가 숨어 있던 중이었음  
그러나 전날 내린 비로 바닥에 물기가 있는 차양에서 미끄러지며 1층으로 추락하여 허리 4번 요추와 발목이 골절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교칙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도교사의 철저한 지도  
○ 학생들에게 사고 사례별로 안전사고를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83 (중학교)

### 교내 건물 간 통행로 지붕에서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19일 14시 35분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학생의 부탁으로 창문을 통해 실내화 주머니를 던졌지만 건물 간 통행로 지붕에 떨어짐

사고학생이 이를 꺼내려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아크릴로 된 지붕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요·척골 원위부 골절 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 한순간의 부주의

**예방대책**

-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함양
- 위험 장소에 대한 지도교사의 안전통제 및 지도·감독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4 (중학교)

### 커튼을 치던 중 유리창을 깨뜨려 팔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7일 14시 5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의 커튼을 치던 중 커튼 고리가 빠짐  
고리를 달기 위해 창틀에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뎈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짚은 유리창이 깨져 팔 열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 교실의 시설물 관리 점검 미흡
- 사고학생의 위험한 행동 인지 부족

**예방대책**

- 고탄력 유리창이나,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파손 예방
- 안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5 (중학교)

### 축구 경기 중 넘어져 무릎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9월 5일 13시 20분경 사고학생이 점심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 넘어져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무리한 승부욕으로 인한 위험인지 능력 미흡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미흡

**예방대책**

-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
- 운동 경기 시 위험 예지 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6 (중학교)

### 창문을 넘던 중 추락하여 발목 골절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10년 3월 23일 13시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교내 건물 앞에서 족구를 하던 중 공이 현관 위 발코니로 올라감  
이를 꺼내려 창문을 넘어가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더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목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장소 또는 시설 접근 금지 위반

**예방대책** ○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를 하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7 (중학교)

###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 중 추락하여 뇌진탕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1월 20일 12시 55분경 사고학생이 친구들과 옥상에서 눈싸움을 하기 위해 4층 복도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 중 손이 미끄러져 3층 교실로 추락하여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88 [중학교]

### 친구와 장난이 다툼으로 변하여 상해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2월 9일 9시 50분경 ○○○학생이 휴식시간에 사고학생에게 다가와 머리를 당기는 장난을 반복하자 화가 난 사고학생이 팔을 뿌리쳤고, 뿌리친 팔이 ○○○학생의 턱에 스치자 사고학생의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5주 상해 진단을 입힌 사고

**사고원인**

- 친구 사이의 과한 장난이 다툼을 야기함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상해 발생

**예방대책**

-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 지도
- 조·종례 시간을 이용하여 심한 장난 등에 대해 사전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가해자의 경제 상황 고려)

## 사 례 89 (중학교)

###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져 치아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1월 15일 11시 20분경 사고학생은 친구들과 매점 옆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간식을 먹던 중 본인의 의자가 너무 더러워 옆 의자로 옮겨가다가 넘어져 의자에 치아를 부딪쳐 치아 파절 및 탈구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미 실시

**예방대책**

- 학생의 안전의식 함양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90 (고등학교)

### 장난치다가 교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사망

○○공업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1일 14시 35분경 사고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친구와 팔뚝 때리기 장난을 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교실 벽에 부딪쳐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장난에 대한 학생 스스로 인식 부족
- 휴식시간에 교실 면학 분위기 조성 미흡

**예방대책**

- 지도교사가 수업시간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통제 필요
- 학생들에게 지나친 장난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 각하(법령상의 절차 위반)
- 보상심사위원회 : 공제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공제급여 청구 기각

## 사 례 91 (고등학교)

### 흡연을 위해 창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

○○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6월 18일 12시 7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학생과 흡연을 위해 교실의 4층 창문 밖 차양으로 나가려다 난간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도교사의 철저한 감독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유족급여 지급 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유족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92 (고등학교)

###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월 7일 13시 45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뎠다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발목, 어깨, 대퇴부의 복합 골절상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 평소 옥상 창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학교 측의 관리부족

**예방대책**

- 학교 측의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 학생들에게 사전 안전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 사 례 93 (고등학교)

### 식사 중 갈비탕의 뼈를 잘못 씹어 치아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9월 16일 12시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급식메뉴인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잘못 씹어 충치가 있던 어금니의 파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치아관리 소홀 및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치아관리 방법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94 (고등학교)

###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1월 28일 14시 25분경 사고학생이 청소시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도교사가 들어오기 전 교시 수업에 빠진 사고학생은 지도교사에게 혼날 것을 걱정해 3층 교실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하여 허리뼈 골절 및 양쪽 발목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예방대책**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함양
- 평소 지도교사의 학생 관리 철저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95 (고등학교)

### 레슬링 놀이 중 엉덩이 뼈 골절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11월 6일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대학교 임시 면접수업을 하기 위해 강당으로 이동하여 친구 및 선배와 레슬링 놀이를 하던 중 선배의 등에 올라탔고, 선배가 허리를 숙이며 몸을 흔들자 사고학생이 떨어져 왼쪽 고관절 골절상을 당함

**사고원인** ○ 지나친 장난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지도교사의 입장 지도 철저  
○ 교내에서 지나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각하(법정청구기간 90일 도과)  
○ 보상재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96 [고등학교]

### 충동적으로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4월 6일 19시 55분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갑자기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껴 3층 교실 창문을 통해 옆 교실로 이동 중 1층으로 추락하여 요추제1번방출성골절, 좌골반익상부골절, 좌비구전방주골절, 좌치골하지골절, 좌대퇴골결절견열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 자율학습시간 등에 대한 생활지도 미흡

**예방대책**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97 [고등학교]

###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로 이동 중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3월 23일 18시 25분경 사고학생은 저녁시간에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 3층 교실 창문에서 발코니로 점프를 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하여 비장손상, 우측 요·척골 골절, 주관절 탈구, 요골 골절, 관골 상악 복합체 골절, 우측 안와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에 대한 주의의식 결여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위험한 장소 및 행동에 대한 지도교사의 통제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보상심사위원회 : 추가 요양급여 청구 기각



## 사 례 98 (고등학교)

### 골키퍼를 보던 중 척추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17일 13시경 사고학생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축구경기에서 골키퍼를 보던 중 공을 막기 위해 몸을 날린 후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미흡

**예방대책**

- 축구경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위험요소 파악
- 운동 중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99 (고등학교)

###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산에 눈이 찢려 장해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6월 22일 13시 20분경 사고학생이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던 중 교실에서 ○○○학생이 장난으로 내민 우산에 눈을 찢려 시신경 유두손상 및 유리체 출혈상을 당한 사고

**사고원인** ○ 지나친 장난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교내에서 지나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청구 반려
- 보상심사위원회 : 요양·장해급여 청구 기각
- 보상재심사위원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결정

## 사 례 100 (고등학교)

### 잡기놀이 중 옹벽에서 추락하여 장애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10월 16일 17시 40분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잡기놀이를 하던 중 도망을 가다 매점 뒤 옹벽에서 추락하여 출혈성 뇌좌상, 급성 뇌경막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위험한 장난에 대한 조치 미흡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지도 강화
- 교내 시설물에 점검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101 (고등학교)

### 야구공 주고받기를 하던 중 공에 맞아 치아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10년 3월 29일 18시 15분경 사고학생은 저녁시간에 친구들과 야구공 주고받기를 하던 중 햇빛에 눈이 부서 잡지 못한 공이 치아에 부딪혀 상악 양측 중절치 탈구 및 좌측 측절치 파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사고학생의 부주의

**예방대책** ○ 학생들에게 사례별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02 (고등학교)

### 화단 아래로 급히 내려가던 중 넘어져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24일 8시 50분경 사고학생은 휴식시간에 교내 체과점을 다녀오던 중 본관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급히 화단을 뛰어넘다 돌 조형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 인대손상 및 콩팥 파열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

**예방대책**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학교 시설물 보완 작업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03 (고등학교)

### 학교 담장을 넘던 중 손가락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사고개요** 2008년 11월 25일 13시 20분경 사고학생은 점심시간에 ○○○학생과 학교 후문에 있는 책방에 가기 위해 담장을 넘어 무단외출을 시도 중 담장에 손가락이 끼어 피부가 찢어지고 인대 및 신경파열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교칙 준수 불이행과 안전지도 미흡
- 선도부 학생들을 배치하였으나 지도교사가 없어 무단외출 방지 실효성 미흡

**예방대책**

- 건물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점심시간에 적극적인 생활지도
- 선도 활동 시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4. 학교체류시간

### 사 례 104 (초등학교)

#### 교실문에 손가락이 끼어 장해 진단

○○초등학교 5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9월 11일 8시 25분경 사고학생이 등교하여 교실문을 닫던 중 왼쪽 새끼손가락이 문에 끼어 제5수지 중위지골 절단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교안전 사고예방 교육 미흡
- 학생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미흡

**예방대책**

-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생들의 알림장을 이용하여 가정에도 사고예방 홍보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105 (초등학교)

### 장난을 치던 중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4월 20일 15시 30분경 사고학생이 휴식시간에 3층 복도 창문에서 혼자 장난을 치던 중 1층으로 추락하여 골반뼈와 발목 및 손목에 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예방대책**

- 학생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학교 고층 교실 창문 등을 학생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안전망 설치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06 (초등학교)

### 조기 등교생이 교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7년 11월 27일 7시 50분경 사고학생이 조기 등교하여 ○○○학생과 교실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교실 창문으로 넘어가다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평소 맞벌이 가정 학생의 조기 등교생에 대한 사전 교육 미흡

**예방대책** ○ 조기 등교생에 대한 지도대책 마련 강구  
○ 학생들에게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사 례 107 [초등학교]

### 계단에서 술래잡기 중 난간에 얼굴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0월 20일 14시 20분경 사고학생은 종례 후 친구들과 교내 계단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들키지 않으려고 난간 사이에 머리를 넣었고 술래가 다가오자 황급히 얼굴을 빼려다 좌측 뺨 부위가 굵힌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점검 미흡
- 하교 시 지도교사의 입장지도 결여

**예방대책**

-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적절한 안전조치
- 평소에 옥상에 올라가서 놀지 못하도록 안전망 설치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II. 질병에 의한 사례

1. 일사병
2.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3.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 일사병

### 사 례 108 [중학교]

#### 등산 후 일사병으로 사망

○○중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4월 8일 10시 10분경 사고학생이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산 등산을 하던 중 정상에 도착하여 지도교사에게 “힘들고 머리가 울린다” 는 말을 하였음

이후 지도교사는 사고학생을 그늘로 옮긴 후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체험학습 활동 전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상태 확인 미흡

**예방대책** ○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 요청  
○ 허약 체질 학생 별도 관리·감독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2.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사 례 109 (유치원)

#### 페이스페인팅 물감에 의한 피부염

○○유치원 원아반 (여)

**사고개요** 2009년 5월 1일 14시경 사고학생은 ○○유치원에서 페이스페인팅 물감으로 얼굴에 동물그림 그려주기 활동을 한 후 해당 부위가 빨갱게 부어올랐음

학부모가 ○○병원으로 사고학생을 데려가 검사 결과 알레르기 진단을 받고 처방해준 연고를 발랐으나 얼굴에 흉터가 남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시술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원아의 체질, 건강상태 및 물감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 수집 미흡

**예방대책** ○ 신체 접촉 물품은 알레르기, 트러블 등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3.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사 례 110 (중학교)

##### 학교 뒷산을 다녀온 후 쯔쯔가무시병 감염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11월 16일 12시경 사고학생과 친구들은 체육수업 중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학교 뒷산 돌밭에서 휴식을 취하다 내려옴  
다음날부터 사고학생은 감기 증세가 지속되었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쯔쯔가무시균에 의한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야외 학습장소의 위험에 대한 정보수집과 그에 따른 조치 미흡
- 야외활동 후 위생관리 소홀 및 정확한 병명 진단 지연

**예방대책**

- 야외학습장소 선정 시 주변위험요소 확인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III. 기타 특이 사례





## 사 례 111 [중학교]

### 미니등반대회에 참가 중 뇌출혈

○○중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4월 17일 9시경 사고학생이 ○○공원에서 실시한 미니등반대회에 참가하여 등반 중 등반을 시작한 지 1시간 후부터 친구에게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하산 시에는 더욱 통증이 심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귀가함

집에서 취침을 한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었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병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
- 이상증상 발현 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고학생의 부주의로 손해 확대

**예방대책**

- 지도교사는 야외 활동 시 학생의 상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12 [초등학교]

### 지적장애 학생이 열차에 치여 사망

○○초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4월 4일 12시 20분경 사고학생(지적장애)이 종례시간에 화장실을 간 후 12시 40분경까지 돌아오지 않아 교내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함

이후 14시 10분경 ○○경찰서에서 학생 한 명이 열차에 치였다는 연락이 옴

목격자의 진술과 수사결과 13시 25분경 사고학생이 학교 인근 철로를 걸어가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사고

**사고원인** ○ 저학년인 특수학생 관리의 한계로 인한 학교 이탈

**예방대책** ○ 통합교실 운영 시, 정인지체아동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특수아동을 일반학급에 배정 시 보조교사 반드시 배정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지급

## 사 례 113 (초등학교)

### 스케이트 장 현장학습 후 질병 발생

○○초등학교 6학년 (여)

**사고개요** 2009년 4월 24일 15시경 사고학생은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스케이트장을 다녀온 후 고열과 구토 등을 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결과 수막뇌염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교육 실시  
○ 학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14 [중학교]

### 기왕증을 가진 학생이 교사의 체벌 후 뇌출혈

○○중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사고학생은 지주막 낭종으로 뇌수술을 받은 학생으로 학교에서 요양호자로 지도 상 주의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음

2009년 4월 8일 12시경 사고학생이 수업 중 떠들자 요양호 학생임을 몰랐던 지도교사가 꿀밤 2대를 때린 후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지도교사의 요양호자에 대한 숙지 미숙

**예방대책** ○ 요양호자에 대한 정보를 지도교사에게 알려주고 교사는 수업에 앞서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사 례 115 [중학교]

### 교사의 훈계 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

○○중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사고학생이 2009년 6월 16일 14시경 지도 교사의 물 분필을 친구 2명과 가지고 놀았고, 다음날 지도교사에게 훈계를 받음  
지도교사가 교무실로 내려 간 후 4층 복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요양호자에 대한 관리 미흡
- 담당교사의 훈계 과정 부적합

**예방대책**

- 요양호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 필요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16 (고등학교)

### 기왕증을 가진 학생이 체육수업 후 사망

○○고등학교 1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4월 16일 14시 15분경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고학생은 체육수업 후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동맥 판막하 협착증으로 인한 기형심장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특이체질에 의한 불의의 사고 및 학교 입학 때 신체이상여부 확인 미흡
- 학생 및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정기적인 검진 미실시

**예방대책**

- 특이체질을 갖고 있는 요주의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요양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교사 및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도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17 (고등학교)

### 상급학생의 폭행에 의한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20일 9시경 사고학생은 아침 조회를 나가지 않고 교내에 있던 중 학생회장로부터 조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또 다시 학생회장이 교내를 순회하던 중 매점에서 사고학생을 발견하고 “너희들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 형 말 왜 안 들어, 미쳤어?”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나오는 사고학생의 복부, 가슴, 정강이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사고학생이 쓰러짐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미흡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미흡

**예방대책**

-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예방교육 및 수시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교육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처리경과**

- 공제회 : 고등법원 화해 조정 결정에 따라 유족 급여 지급

## 사 례 118 (고등학교)

### 교사의 훈계 후 창문에서 뛰어내려 척추 장해

○○고등학교 2학년 (여)

**사고개요** 2007년 6월 29일 사고학생은 교사의 훈계에 결백을 증명하고자 교실 밖 창문 3층에서 뛰어내려 척추골절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교사의 훈계에 의한 사고학생의 충동적인 행동

**예방대책** ○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 조심  
○ 자신의 신체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교육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장해급여 지급

## 사 례 119 (고등학교)

### 수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2일 8시 43분경 사고학생은 교실 뒤 사물함에 책을 놓고 ○○○학생과 서서 수업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학교 입학 시 신체 이상 여부 확인 미흡
-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응급대책 여부

**예방대책**

- 사고발생 시 응급체계 확립
- 학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20 (고등학교)

### 자율학습 중 기왕증에 의한 쓰러짐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9년 3월 24일 20시 15분경 사고학생은 자율학습시간에 자습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진단을 받음

**사고원인** ○ 사고학생 본인의 건강상태 고지 의무 소홀

**예방대책**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교육 실시  
○ 학교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21 (고등학교)

### 친구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

○○고등학교 3학년 (남)

**사고개요** 2008년 10월 17일 13시 30분경에 사고학생은 지방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학생이 운전하는 차(○○○학생 부친 소유)를 타고 가던 중이었음  
이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고학생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사고원인**

- 과속 및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미흡
- 교칙 위반 및 교직원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 학교에서의交通安全교육 및 생활지도 강화 미흡

**예방대책**

- 학생 신분으로서 금지된 자동차운전, 음주, 흡연 등에 대한 계도 교육 활성화

**처리경과**

- 공제회 : 유족급여 청구 반려

## 사 례 122 [일일교사]

### 학부모 일일교사 수업 중 실명

○○초등학교 명예 일일교사 (남)

**사고개요** 2008년 9월 21일 14시 45분경 학부모 일일교사 ○○○는 학교 문화 예술 주기 집중계획의 일환으로 목공수업 중 튀어나온 못을 연마기로 갈다가 날이 깨지면서 눈에 튀어 좌안 실명 및 상안검(7cm)의 부상 진단을 받은 사고

**사고원인**

- 명예교사 학부모의 연마기 조작 미숙 및 연마기 상태 파악 미숙
- 감독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

**예방대책**

- 숙련된 기술자 및 자격증 소지자 명예교사 임용

**처리경과**

- 공제회 : 요양급여 지급

# [부 록]



# 2009년도 학교안전사고 통계

## □ 공제급여 지급 통계

### ○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추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급건수	33,834	37,992 (12.3%)	41,114 (8.2%)	48,551 (18%)	<b>53,231</b> (9.6%)
보상금액	16,350	16,077 (△1.6%)	17,000 (5.7%)	17,233 (1.4%)	<b>19,623</b> (14%)

※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 종류별 건수

(단위 : 건, 백만원)

종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보전비용 등	계
건수	<b>53,144</b>	48	15	24	53,231
(비율)	<b>(99.85%)</b>	(0.09%)	(0.02%)	(0.04%)	(100%)
금액	<b>14,324</b>	2,936	1,458	905	19,623
(비율)	<b>(73%)</b>	(14.96%)	(7.43%)	(4.61%)	(100%)

### ○ 지급 규모별 건수

(단위 : 건)

금액	~50만 원 이하	~1백 만원 미만	~2백 만원 미만	~5백 만원 미만	~1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건수	45,515	5,129	1,871	595	44	38	22	17	53,231
(비율)	<b>(85.5%)</b>	<b>(9.6%)</b>	(3.5%)	(1%)	(0.1%)	(0.1%)	(0.1%)	(0.1%)	(100%)

## □ 사고발생 통계

### ○ 사고시간별 건수

사고 시간	체육 시간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일반 수업	실험 실습	등· 하교	방과 후 외 기타	계
건수	25,664	20,881	2,900	3,865	756	3,492	11,960	69,518
(비율)	(36.9%)	(30%)	(4.2%)	(5.6%)	(1.1%)	(5%)	(17.2%)	(100%)

### ○ 사고원인별 건수

사고원인	학생부주의	운동경기 중	상대방	우발적사고 외	계
건수	37,471	17,151	10,726	4,170	69,518
(비율)	(53.9%)	(24.7%)	(15.4%)	(6%)	(100%)

### ○ 사고장소별 건수

사고장소	운동장	계단,복도	교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외 기타	계
건수	25,473	11,964	11,987	7,018	13,076	69,518
(비율)	(36.7%)	(17.2%)	(17.2%)	(10.1%)	(18.8%)	(100%)

### ○ 사고부위별 건수

사고부위	손,손가락	발	치아	무릎	팔	안면 외	총계
건수	11,723	15,024	7,022	4,104	3,599	28,046	69,518
(비율)	(16.9%)	(21.6%)	(10.1%)	(5.9%)	(5.2%)	(40.3%)	(100%)



검 토 · 편 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총장 이장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팀 장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 리 이남승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 임 김태용

## 학교안전사고 사례집

---

발 행 인 : 양 희 산

발 행 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 화 : 02-793-5015

팩 스 : 02-793-5016

홈페이지 : <http://www.ssif.or.kr>

